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9-11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8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8누7816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A
	[redacted]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장
제 1 심 판 결	인천지방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구합52352 판결
변 론 종 결	2019. 5. 17.
판 결 선 고	2019. 6. 28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7. 12. 27. 원고에게 한 취득세,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9-11

이 유

1.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재영

판사 이승철

판사 김제욱